

광주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가단5306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피 고 A

변론 종결 2021. 3. 19.

판결 선고 2021. 4. 2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나주시 C 임야 6,832㎡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나주시 C 임야 6,832㎡ 중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9. 12. 12. 접수 제337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2. 4.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데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가 E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연체함으로써 2020. 2. 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0. 5. 12.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E은행에게 267,646,885원(원금 263,500,000원 + 이자 4,146,8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 및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0차전571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5. 20. '소외 회사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512,7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부동산의 처분행위

B는 나주시 C 임야 6,832㎡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 12. 10. 이복형제로서 위 부동산의 또 다른 1/4 지분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9. 12.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자력 상황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는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F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2,223,000원, G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0원, F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431,111,000원, E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243,800,000원, H 보증채무 320,000,000원, I은행 보증채무 76,744,000원을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나주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J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보다 앞서 이미 원고와 소외 회사 및 B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B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2020. 2. 1. 대출원리금 연체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원고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5. 12.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 회사 및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B의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되고, B는 채무초과상태에 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 사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복형제인 B가 선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지 못하게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B로부터 그의 지분을 매수한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채권·채무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송에서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하는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명화